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4
----------	-------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의자 : 김상희 · 기동민 · 신창현
윤소하 · 이규희 · 김경협
오영훈 · 임종성 · 인재근
서영교 · 정춘숙 · 박찬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

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을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중단 또는 수입해제 처분을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p> <p>① ~ ③ (생 략) <u><신 설></u></p> <p>④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p>
<p>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③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 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p>	<p>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 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p>

<p><u>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u>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u>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u> <u>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u> -----.</p>
--	---